

인권정책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

대상 주식회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이나 거래상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함으로써 인권 존중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국제 인권 장전ⁱ, 및 국제 노동 기구 (ILO)의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ⁱⁱ 상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존중의 책임은 대상 주식회사의 모든 임원과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나아가 협력사와 그 외의 관계자에 의한 인권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대상 주식회사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경우, 대상 주식회사는 이러한 협력사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해당자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대상 주식회사 가치관·정책과의 관계

대상 주식회사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활동상 불가결하며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다. 이 인권정책은 대상 주식회사의 기업 이념에 근거하여, 이 책임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 주식회사의 윤리준법경영시스템,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다.

1. 사업 활동에 관한 인권 과제

대상 주식회사는 사업 활동에 관련하는 이하의 인권 과제에의 대처가, 인권 책임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 차별: 개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또, 국적·인종·민족·종교·사상·성별·연령·장애·성적 지향·고용 형태 그 외 각국의 법령으로 보호되고 있는 특성에 의한 차별이나,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를 실시하지 않는다.

- 괴롭힘, 학대: 정신적, 육체적 불문하고 상대를 상처 입히는 언동이나 모든 괴롭힘, 학대를 실시하지 않는다.
-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인신매매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현대노예도 허용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사업활동을 하는 국가의 적용 법령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
- 노동안전위생: 직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규칙과 그 운용 상황을 확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든다.
- 노동 시간과 임금: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노동 시간과 임금에 관한 모든 법령을 준수한다. 최저한의 생활을 채울 수 있는 임금의 실현에 노력한다.
-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있어서의 영향: 대상 주식회사의 인권 정책을 서플라이어와 공유하고 그 준수 상황을 확인·평가한다. 또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있어서의 인권의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도 협력한다.
- 지역사회에의 영향: 사업 활동이 토지의 권리, 물에의 접근, 건강, 주민의 권리 등 지역사회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사회에 있어 인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고충 처리 메커니즘(신문고제도, 핫라인 제도)

- 적용되는 법령·규칙이나 인권정책을 포함한 사내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한 모든 임직원은 내부 신고 제도의 창구에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인권정책을 위반하거나, 혹은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 제보를 실시한 임직원을 비롯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도 실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고 또는 제보는 대상 주식회사의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

3. 교육과 연수

- 인권 정책을 뿌리내리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연수와 교육을 실시한다.

4. 모니터링 및 보고

- 인권정책의 준수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에 따라서 개선해 갈 것이다. 웹 사이트, 지속가능보고서 그 외의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인권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조치의 진행 상황·인권존중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인권 존중의 책임 수행

대상 주식회사는 유엔의 경영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ⁱⁱⁱ의 실행을 통해서 인권 존중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를 위해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갈 것이다. 인권 실사 프로세스에는 잠재적 또는 실제 인권에 대한 영향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 것이나 리스크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권에의 영향이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검증해 갈 것이다.

또한, 대상 주식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거나 이것에 관여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사내외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그 구제에 충실히 임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사업 활동을 하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 나라의 국내법 및 규제를 준수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국내법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대상 주식회사는 본 정책이 회사의 모든 활동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인권 실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적절한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잠재적 및 실제의 영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협의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i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 및 이를 조약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3개 문서의 총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ii 'ILO 근로자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 노동의 실효적 폐지,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배제, 노동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경영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은 2011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 사업 활동과 관계하는 인권 면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기업에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